

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6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」 존속기한이 2025. 11. 30.로 존속기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. 11. 30.에서 2030. 11. 30.로 연장함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바.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02. 26. ~ 2025. 03. 18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 중 “2025년 11월 30일”을 “2030년 11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건설도로하천과
입	건설도로하천과장	장 명 원
안	건설도로행정팀장	김 남 국
자	담 당 자 (연락처)	한 성 모 (481-2423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존속기한)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	제21조(존속기한) ----- 2030년 11월 30일-----.

□ 부대의견

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우리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의 심의·자문을 위해 “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”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, 그간 실질적 회의 개최 실적이 단 1회에 그치는 등 운영 성과가 미비한 실정임.
- 따라서, 위원회가 형식적 존속에 그치지 않도록 기능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수렴·조정하고, 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설도로하천과는 구체적인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.